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질 경쟁률을 높이고,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시험과목 개편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관련 규정 개정

- 제1차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민법, 형법 폐지)하고, 헌법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며, 제1·2차시험의 합격자수를 확대함(안 제12조제1항 및 별표 6의1)
- 제2차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함(안 별표 6의1)

나.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병역의무 복무 중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가 된 사람의

남은 의무복무 기간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기간 규정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17조제1
항제1호)

○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일부 명칭이 변경된 것에 맞추어 이를 반영함
(안 별표 5의1)

4.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 및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를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로 하고,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로 하며,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를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를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로 한다.

별표 5의1 중 기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 급		5급 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기계	기계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	기계 직무분야 기능장 기계 직무분야 기사 환경·에너지 직무분야 에너지 관리기사	기계 직무분야 산업기사 환경·에너지 직무분야 에너지 관리산업기사

별표 6의1 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급별	직군 직렬및 직류 과목	사법행정사무					
		법 원 사 무	배점 비율 (%)	등 기 사 무	배점 비율 (%)	조 사 사 무	배점 비율 (%)
5급공개 경쟁채용 시험	1차시험 과목	1. 헌 법	0	1. 헌 법	0	1. 헌 법	동일함
		2. 언어논리영역	동일함	2. 언어논리영역	동일함	2. 민 법	
		3. 자료해석영역		3. 자료해석영역		3. 형 법	
		4. 상황판단영역		4. 상황판단영역			
		5. 영 어		0		5. 영 어	
		6. 한국사	0	6. 한국사	0	5. 한국사	
	2차시험 과목	1. 행 정 법	10	1. 행 정 법	10	1. 친족상속법	20
		2. 민 법	30	2. 민 법	30	2. 가사소송법	20
		3. 형 법	20	3. 상법(총론, 회사편)	20	3. 형 법	20
		4. 민사소송법	20	4. 민사소송법	20	4. 소년법	10
		5. 형사소송법	20	5. 부동산등기법	20	5. 심리학, 사회 사업학, 교육 학 중 1과목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헌법과목에 관한 사항 및 별표 6의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법원행정고등고시"라 한다)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또는 등급 <u>이상</u> 취득자로서 영어과목 및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u>10배수</u>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총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u>130퍼센</u></p>	<p>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 ----- ----- ----- ----- ----- ----- ----- ----- ----- <u>이상을 취</u> <u>득하고, 헌법과목 만점의 60퍼</u> <u>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서</u> <u>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u> <u>과목</u>----- ----- <u>15배수</u>----- ----- ----- ----- ----- ----- ----- ----- ----- ----- ----- <u>150퍼센</u></p>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937